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6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이영실·이병도·김화숙·오현정·
김소양·김혜련·김동식·김용연·
봉양순·서윤기·이정인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내용이 서울시 정책과 상이하고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과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 나.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라. 시장의 책무로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추진을 규정함(안 제3조)

마. 다자녀 가족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바. 다자녀 가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자녀 가족의 주거, 교육, 취업·창업, 문화·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자녀 가족 지원)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의 신설에 따른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비용,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신설에 따른 다자녀 가족 실태조사 실시 비용 발생
 -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별도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같은 조례안 제5조(다자녀 가족 지원)의 신설로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추진 사업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붙임 참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39,500천원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39,500천원(연평균 27,9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비용 (안 제6조)	9,900	9,900	9,900	9,900	9,900	49,500
	다자녀 가족 실태조사 실시 비용 (안 제7조)	30,000	-	30,000	-	30,000	90,000
	소계(b)	39,900	9,900	39,900	9,900	39,900	139,500
□총 비용(b-a)		39,900	9,900	39,900	9,900	39,900	139,500

○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비용 ≙ 49,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비용

= (참석수당 × 수당지급 참석인원 × 개최건수) + (업무추진경비 × 참석인원 × 개최건수)

= (150,000원 × 9명 × 6회) + (30,000원 × 10명 × 6회)

= 9,900천원

○ 다자녀 가족 실태조사 실시 비용 ≙ 90,000천원

- 다자녀 가족 실태조사 실시 비용(2년마다 1회)

= 조사비용 × 조사횟수

= 30,000천원 × 3회

= 90,000천원

※ 참고) 실태조사 단가(2018년, 2019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

- 아동종합실태조사 30,000천원(2019년)

- 청소년실태조사 30,000천원(2018년)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500천원(2019년)

- 노숙인실태조사 63,000천원(2019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